

---

# 2023년 정부혁신 실행계획

---

2023. 4.



방송통신위원회

# 목 차

<b>I. 추진과제 총괄표</b> .....	1
<b>II. 대표 추진과제</b> .....	2
<b>III. 공통자율 추진과제</b> .....	4
1. 국민 일상이 편해집니다. ....	4
2. 기업 경제활동이 쉬워집니다. ....	8
3. 사회 안전을 든든히 지킵니다. ....	14
4. 과학적 근거로 정책의 질을 높입니다. ....	18
5. 유연하고 민첩하게 일합니다. ....	20
6.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구현합니다.. ....	22
7. 사회문제를 예견하고 대비합니다. ....	24
8. 상호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	26
9.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만듭니다. ....	28
<b>IV. 정부혁신 확산 방안</b> .....	30

# I. 추진과제 총괄표

1.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b>1. 국민 일상이 편해집니다.</b>		
	①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 개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연중
	② AM라디오 - 표준FM라디오 기능조정	지상파방송정책과	~'23.12월
	<b>2. 기업 경제활동이 쉬워집니다.</b>		
	①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방송광고정책과	'23.2월~
	②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연중
	③ 방송사업자 허가 서류 간소화	지상파방송정책과	~'23.11월
	<b>3. 사회 안전을 든든히 지킵니다.</b>		
	① 방송재난관리 강화	재난방송관리팀	연중
② 휘발성 음란정보 유통방지 모니터링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연중	
2.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b>4. 과학적 근거로 정책의 질을 높입니다.</b>		
	① 스마트업무시스템 활용 활성화를 통한 업무효율화	정보보안팀	연중
	<b>5. 유연하고 민첩하게 일합니다.</b>		
	① 통신분쟁조정제도 및 온라인피해 365센터 활성화	통신분쟁조정팀	'23.5~12월
	<b>6.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구현합니다.</b>		
	① 인사자율성 확대 등 인사운영 개선	운영지원과, 의안·정책관리팀	~'23.12월
3. 소통. 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b>7. 사회문제를 예견하고 대비합니다.</b>		
	① 재난방송 협력체계 강화	재난방송관리팀	연중
	<b>8. 상호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b>		
	①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대응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연중
	<b>9.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만듭니다.</b>		
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역미디어정책과	연중	

## Ⅱ. 대표 추진과제

### 추진과제

###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주관부처/부서	방송통신위원회 / 단말기유통조사팀	협조기관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자	이선희 사무관	연락처	02-2110-1551

#### □ 추진배경

- 유통점 등을 통한 휴대폰 가입 및 반납 등의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 유출사고 발생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 \* 불법 개통 프로그램 팔아 수익..“대포폰에도 악용” (21.4.14, 연합뉴스)
  - \*\* 휴대전화 반납하면 할인해 준다더니..“삭제 사진 복원해 유출” (21.9.23, MBC)

#### □ 현황(문제점) 진단

- (휴대폰 가입시) 이용자가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하거나 본인확인 과정에서 정보 부정사용 등 문제 발생 우려
- (휴대폰 반납시) 기기변경·중고폰 매매 등 휴대폰 반납시 이루어지는 데이터 전송·삭제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정보 유출 문제 발생 가능

#### □ 추진방향

- (협의회 운영) 이통사, 유통협회, 중고폰업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자율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 \* 주체별 분과모임 및 전체회의 개최, (필요시)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의견 청취

####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이용, 해지 등 쏠주기에 걸쳐 유통현장에서 발생가능한 데이터 유출사례, 관련제도 및 해외 사례 분석

- 유통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용자 데이터유출 문제 개선방안 마련
  - 휴대폰 가입·반납·해지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 데이터 전송·삭제 등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
  - 데이터를 직접 취급하는 유통망 종사자에 대한 자격부여 및 교육, 관리체계 구축 등 유통망 관리·감독 방안 마련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제도 미흡	○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자율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점 데이터 유출사고 방지 대책 미흡</li> <li>○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자율시스템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망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이용자 피해 선제적 보호</li> <li>○ 휴대폰 데이터 정보유출을 방지 위한 유통체계 구축</li> </ul>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없음

**□ '23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추진체계**

-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자율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 (필요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

**□ 추진일정**

- 연구반 운영(~'23.6월), 개선방안 마련(~'23.9월)
- \* (필요시) 가이드라인 또는 법안 마련 검토

**□ 홍보계획**

- 보도자료 배포,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 활용

### Ⅲ. 공통자율 추진과제

#### 1-1-①

####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개선

주관부처/부서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협조기관	외교부
담당자	성재식 사무관	연락처	02-2110-1521

#### □ 추진배경

-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3에 따라 온라인 상 개인을 식별·인증해주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중  
\* 방통위는 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기반의 총 24개 기관 지정
- 휴대폰, 금융계좌 등을 발급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의 경우 본인확인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국내 온라인 서비스(금융, 상거래 등) 이용 제한

#### □ 현황(문제점) 진단

- 본인확인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통한 실지명의 확인\*(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을 거쳐 I-PIN 등 본인확인수단을 발급받아야 하나,  
\* 실지명의 확인 : 신분증상 이름과 사진을 대면확인 하는 방식의 신원확인을 지칭,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를 실지명의 확인에 준하는 확인으로 인정  
- 재외국민은 해외에서 신분증 대면확인이 어렵고, 국내에서 발급받은 휴대폰 또는 금융계좌도 없는 경우가 많아 본인확인수단 발급 어려움

#### □ 추진방향

- 외교부와 협조하여 여권 기반의 온라인 실지명의 확인 체계를 구축하여 재외국민도 본인확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외교부) 여권 기반의 온라인 실지명의 확인 체계를 구축하여 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이 이를 기반으로 본인확인수단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방통위) 외교부가 구축하는 온라인 실지명의 확인체계가 現 「본인 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방통위 고시) 등에 따른 실지명의 인정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축 단계에서 자문 및 기술지원(KISA 협조)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재외국민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불가	○ 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에 대해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 가능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재외국민들의 국내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다양한 민원 발생	○ 여권 소지 재외국민들의 본인확인서비스가 가능하여 관련 민원이 대폭 해소되고, 재외국민들의 우리 정부 서비스 만족도 증가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외교부가 수행하던 본 업무가 '23.6월을 기해 신설되는 재외 동포청으로 이관되어 원활한 업무협조 및 인수인계 필요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 없음**

**□ '23년 소요예산 : 해당 없음(외교부 사업으로 추진)**

**□ 추진체계**

- 외교부가 실지명의 확인 체계 구축을 주도하고 방통위와 KISA가 이에 대한 자문 및 기술지원

**□ 추진일정**

- 외교부 등 관계기관 협의 : '23년 上

**□ 홍보계획**

- 방통위 홈페이지, 방통위 페이스북 등 제도개선 홍보

주관부처/부서	방송통신위원회 / 지상파방송정책과	협조기관	-
담당자	전민아 사무관	연락처	02-2110-1424
소요예산	-		

### □ 추진배경

- AM 라디오 청취 수요 감소 및 AM 라디오의 재투자 비용 부담 등에 따라 AM 라디오 운용 효율화 필요성 제기

### □ 현황(문제점) 진단

- 방송사는 AM 청취수요 감소, 시설 노후화, 재투자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AM방송 송출 중단희망
- 라디오 청취자들은 고음질 방송을 깨끗하게 청취할 수 있고 AM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표준FM 선호

### □ 추진방향

- 표준FM으로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AM라디오의 송출 중단 등 기능조정 추진
  - FM라디오를 중심으로 한 보편적 청취매체로의 기반 조성 및 전시·재난 방송 등 AM라디오의 고유한 역할은 유지
- 방송사의 AM방송 송출중단 시 청취권 보호대책 및 대체수단 확보 여부 등을 검토
  - ※ AM방송 송출 중단 시 청취자 사전고지를 선행하도록 하고, 우선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AM 휴지기간 운영(휴지기간 중 청취권 보호 조치 마련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기 휴지 중('22.11월~'23.5월)인 10개 AM라디오에 대한 청취권 보호 내역 확인 후 AM송출중단 여부 검토(~'23.6월)

- 표준FM으로의 대체가능성, 청취자 보호대책을 고려한 AM라디오 휴·폐지 등 송출중단 추가 실시('23.12월)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표준FM라디오를 통해 동일한 내용을 송출하고 있는 AM라디오에 대한 방송사의 중복 투자 발생	○ 방송사의 불필요한 투자비용을 감축하여 방송사 경영개선에 기여 및 UHD 등 차세대 매체투자 유도

**□ '23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추진일정**

- 10개 AM라디오 휴지 종료 후 송출중단 추진(~'23.6월)
- AM라디오 휴·폐지 등 송출중단 추가 실시(연중)

**□ 홍보계획**

- AM 라디오 송출 중단 시 각 사업자별로 대체 청취 수단 안내 등 청취자 보호대책 이행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추진체계**

- 해당사항 없음

**1-2-①****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주관부처/부서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광고정책과	협조기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담당자	이창하 사무관	연락처	02-2110-1274
소요예산	('22년) 1,591백만, ('23년) 1,591백만, ('24년) 1,591백만(추정)		

**□ 추진배경**

-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판로 개척 지원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한 방송광고 지원 필요

**□ 현황(문제점) 진단**

-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금융, 인력, 기술 등)은 있으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브랜드 및 제품 홍보 정책이 부족함
-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 및 정보가 부족하여 방송광고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 전개가 어려워 매출 둔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추진방향**

-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송광고 제작 및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 이미지 제고 및 매출 증가 등 성장에 초점
- 방송광고 시장 내 신규 광고주 유입을 통한 제작사, 광고회사, 방송사 등 전체 방송광고산업 전반의 활성화 유도

**□ 세부 추진사항**

- (지원대상) 혁신형 중소기업 47개사(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기업)
- (지원내용) TV 또는 라디오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방송광고 제작 교육 및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 (TV방송광고) 4천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전체 제작비의 50% 지원
  - (라디오방송광고)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전체 제작비의 70% 지원
- (선정계획) 연 2회에 걸쳐 공모를 실시하며, 평가점수 순으로 선발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비용부담으로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용 곤란	○ 중소기업 47개사 방송광고 제작 지원 - 중소기업 성장과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중소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 중소기업 이미지 제고 및 매출 증대 ○ 방송광고산업 발전 기반 구축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23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계획 수립

**□ '23년 소요예산**

○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 제작 및 컨설팅 지원 : 15.91억원

**□ 추진일정**

- 1차 지원 기업 공모(29개사), 협약 및 사업 진행('23.2월~8월)
- 2차 지원 기업 공모(18개사), 협약 및 사업 진행('23.6월~12월)

**□ 홍보계획**

- 지원사업 모집 공고 안내를 위한 보도자료 배포('23.2월, 6월)
- 지원사업 선정결과 보도자료 배포('23.3월, 7월)

주관부처/부서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협조기관	외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	성재식 사무관	연락처	02-2110-1521

## □ 추진배경

- 변화된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여 위치정보 보호와 산업 활성화가 조화롭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 자동차, 드론 등 다양한 모빌리티 기기가 위치정보, 정보통신기술, 초고속 네트워크 등과 결합한 산업 활성화

## □ 현황(문제점) 진단

- 현행 「위치정보법」은 개인·사물의 위치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위치정보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를 추동하기에 한계가 있음('05년 제정)
  - 이후 스마트 기기 등장으로 다양한 방식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이 이뤄지고 시장 규모도 크게 증가\*하는 등 기존 규제체계에 대한 개편 필요성 증대
    - \* 사업자수/매출액 : ('12)523개/2,238억 → ('16)1,102개/8,302억 → ('21)1,957개/2조6,279억
- 위치정보 기반의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출현, 관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이러한 제도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위치정보법」 전면 개정 추진

## □ 추진방향

- 「위치정보법」 전부 개정안 마련

##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위치정보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위치정보/위치기반서비스→위치정보사업자)하여 진입규제 완화(등록→신고)등 규제를 완화하여 위치정보 보호와 산업 활성화를 조화롭게 추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정보사업자 분류체계 이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li> </ul> </li> <li>○ 진입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정보사업 등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정보사업자로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정보/위치기반서비스→위치정보사업자</li> </ul> </li> <li>○ 진입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정보사업 등록→ 신고</li> </ul> </li> </ul>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도한 위치정보 산업 규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기술 변화에 맞춘 위치정보법 규제 체계를 조속하게 도입하여, 창의적인 우수 비즈니스 모델 출현 및 창업 활성화로 위치정보 산업 생태계가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li> </ul> </li> </ul>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한 법률 개정안 마련에 상당 시일 소요 예상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위치정보법」 전부개정안 발의

**□ '23년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 추진일정**

- 「위치정보법」 전부개정안 발의 : '23년 下

**□ 홍보계획**

- 방통위 홈페이지, 방통위 페이스북 등 제도개선 홍보

**1-2-3**

**방송사업자 허가 서류 간소화**

주관부처/부서	방송통신위원회 / 지상파방송정책과	협조기관	-
담당자	왕경희 사무관	연락처	02-2110-1421
소요예산	-		

**□ 추진배경**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재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의 종이 양이 상당\*하여 자원낭비 및 사업자 부담 가중
  - 재허가 심사 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받아 심사하는 종이 없는 전자문서 심사 방식 도입 필요
- \* '23년 재허가 대상 34개사 × 약 4만장(방송사업 운영실적서,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공사설계서 등) × 20부(제출부수) = 2,720만장

**□ 현황(문제점) 진단**

-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재허가 신청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재허가 신청서류를 종이(책자 제본 등)로 제출
  - 재허가 심사 후 대부분 파기하는 서류로 자원 낭비 발생

**□ 추진방향**

-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시 기존 제출 방식인 종이서류에서 전자문서 제출로 방식 변경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신청서 양식 개선) 재허가 세부심사항목, 전자문서 심사 등에 적합한 재허가 신청서 양식 개선
- (제출 서류 간소화) '2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부터 재허가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받아 종이 없는(Paperless) 심사를 통해 ESG(환경) 역량 강화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재허가 신청 시 다량의 종이서류 제출 (총 2,720만장)	○ 재허가 신청 시 전자문서 제출

※ 34개사('23년 재허가) × 약 4만장(방송사업 운영실적서,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공사 설계서 등) × 20부(제출부수) = 2,720만장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자원낭비 ○ 사업자 제출서류 제본비 등 비용 발생	○ 환경보호를 통한 ESG(환경) 역량 강화 ○ 사업자 예산 및 부담 경감

**□ 추진일정**

- 202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 위원회 의결 : '23.5월
  - 전자문서 심사 등에 적합한 재허가 신청서 양식 개선 등
- 지상파방송사업자(34개사) 재허가 심사 : '23.11월
  - 종이 없는 전자문서 심사

**□ 홍보계획**

- 허가 서류 간소화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한 지상파방송 재허가 세부 계획 보도자료 배포('23.5월)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23년 소요 예산 / 추진체계**

- 해당사항 없음

**1-3-①**

**방송재난관리 강화**

주관부처/부서	방송통신위원회 / 재난방송관리팀	협조기관	-
담당자	정성혜 주무관	연락처	02-2110-1273
소요예산	('22년) 200백만, ('23년) 200백만, ('24년) 220백만(추정)		

**□ 추진배경**

- 안정적인 대국민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방송재난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피해 관리와 복구를 지원

**□ 추진방향**

- 2024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 시행 관리
-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방송재난관리

**□ 세부 추진사항**

- 2024년도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계획(안) 마련
  -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 각 분야별 지침 및 계획(안) 제시
  - 주요방송사업자 방송재난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 중요 방송시설 및 지역민영방송사 안점점검 실시
  - 방송망·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및 확인된 문제점 개선안 마련
  - 구조정실 등 중요 방송시설 및 긴급복구물자 현황 조사
- 재난방송 현장교육 및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모의 훈련 실시 지원
  -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를 위한 메시지 훈련 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10개 방송사*</li> <li>*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MBC(16개사) 지역민방(10개사) 대상 특별점검 추가 실시</li> </ul> </li> </ul>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지역 민영방송사에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신속한 재난방송 권고	○ 방송서비스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재난방송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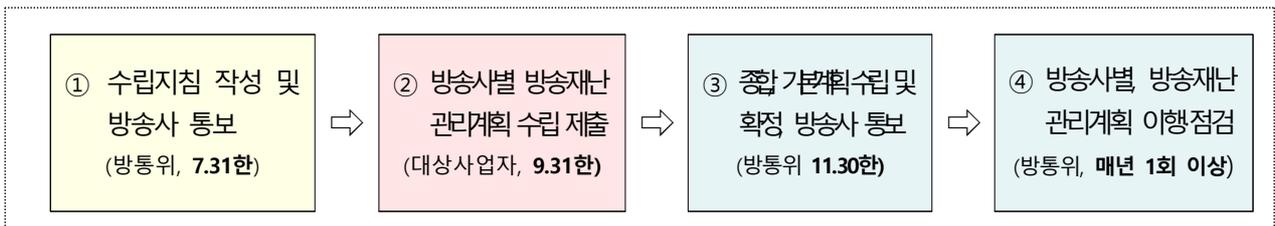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방송재난관리계획의 이행의무 대상은 10개 주요방송사업자(지상파, 종편, 보도PP)로 지역 민영 방송사는 해당되지 않음

□ '23년 소요예산

- 방송재난관리 강화 예산(2억)

□ 추진체계



□ 추진일정

- 2024년도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계획(안) 마련(11.30)
-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분석(연 1회, 동·하절기·해빙기)
  - 26개 지역방송사(지역MBC·지역민방) 대상 특별점검 실시
- 방송시설·비상복구물자·재난방송 현황 DB 관리(연중)
- 주요방송사업자 방송재난관리계획 이행실태 지도점검(연중)

□ 홍보계획

- 특별점검 지역방송사 대상 주요 내용 안내('23.5~6월경, 11~12월경)

주관부처/부서	방송통신위원회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협조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담당자	김은비 사무관	연락처	02-2110-1564
소요예산	('23년) 500백만, ('24년) 미정		

### □ 추진배경

- 가상공간을 활용한 메타버스와 개인 미디어(영상정보) 서비스를 통한 불법 음란정보 유통이 발생함에 따라, 실시간 휘발성 정보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

### □ 현황(문제점) 진단

-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아바타의 성희롱·접촉 등 비윤리적인 행위와 개인 미디어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불법 음란정보의 저장되지 않고 사라지는 특징에 특화된 모니터링 체계 필요

### □ 추진방향

- 메타버스 및 실시간 영상 플랫폼의 공개된 서비스를 통하여 성적 불법 음란행위를 할 수 있는 기능 존재 여부 확인
  - 해당 기능을 통한 성적 불법 음란정보가 유통되는지 점검
- 수집된 성적 불법 음란정보에 대해 관련 심의기관에 신고 접수

###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기능조사 및 모니터링) 주요사업자 서비스 제공 형태 및 기능 등 조사, 불법·음란정보 유통 모니터링 진행
- (시스템 구축) 휘발성 불법·음란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점검 자료 및 이력 관리 등 지원시스템 구축
- (신고 접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불법유해정보를 직접 신고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메타버스 및 실시간 영상 플랫폼에 대한 불법 음란행위 및 음란정보 유통으로 부작용 심각	○ 메타버스(플랫폼) 서비스의 휘발성 음란 정보에 대한 동향파악 및 인터넷 실시간 영상(플랫폼) 등 불법·휘발성 음란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해당 서비스(플랫폼) 제공사업자 자율규제 촉진 도모

**□ '23년 소요예산**

- 휘발성 음란정보 상시점검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5억

**□ 추진체계**

- (방통위)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정책 추진 및 사업관리
- (KAIT) 휘발성음란정보 동향파악, 모니터링, 불법정보신고

**□ 추진일정**

- 휘발성 음란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3분기)
- 휘발성 음란정보 모니터링 실시(연중)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등**

- 해당사항 없음

**2-4-1****스마트업무시스템 활용 활성화를 통한 업무효율화**

주관부처/부서	방송통신위원회 / 정보보안팀	협조기관	-
담당자	허승관 사무관	연락처	02-2110-1443
소요예산	('22년) 비예산, ('23년) 비예산, ('24년) 900백만(추정)		

**□ 추진배경**

- 디지털 기반 업무시스템 활용을 활성화하여 축적된 행정데이터를 공유·활용하고, 현장중심 행정으로 업무 효율 극대화 추진

**□ 현황(문제점) 진단**

- 코로나19로 원격업무, 영상회의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생활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활용도가 점차 감소
  - 사무실·PC 등 고정된 업무환경으로 이동근무 및 협업의 한계

**□ 추진방향**

- (스마트업무시스템 활성화) 업무자료를 G드라이브에 저장, 출장 등 외부에서 업무 시 사무실과 동일하게 자료 접근 및 활용 가능

**□ 세부 추진사항**

- (G-drive 사용 활성화) G-drive에 과팀별 폴더를 생성·주요문서를 보관하고 부서 직원간 자료를 공유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 업무 인수인계시 G-drive 업무자료 인수인계 기능을 활용하여 후임자 업무과약 지원 및 자료유실 방지
  - 주요자료 보관 활성화를 위하여 G-drive 활용 자료 백업의 날 행사를 연 2회 이상 시행
  - G-drive 활용 실적에 따른 자체성과평가 지표 반영을 통해 활용 활성화 도모

- (GVPN 활용 활성화) 출장 업무, 재택근무 등 스마트워크 활용도가 높은 업무부터 원격근무를 통한 GVPN 활용 업무 활성화 추진
- (온북 도입) 1인 2PC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 향상 및 현장행정 강화 등 스마트 업무환경을 조성('24년 예산수립)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년도 G-drive 활용실적</li> <li>- G드라이브 접속실적 1인당 평균 20회(명)</li> <li>- G드라이브 자료 업/다운로드 사용율 8.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drive을 활용 활성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li> <li>- G드라이브 접속실적 1인당 평균 30회</li> <li>- G드라이브 자료 업/다운로드 사용율 15%</li> </ul>

- 기대효과
  - 사무실 중심 업무를 벗어나 현장행정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 추진일정**

- 디지털 기반 스마트업무환경 활용 점검 : '23년. 매반기
- 업무망 및 인터넷망을 사용할 수 있는 온북(노트북) 도입 : '24.1.~

**□ 홍보계획**

- 쏘부서에 스마트업무환경 활용안내 공문시행 및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방통위 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 추진

## 2-5-①

# 통신분쟁조정제도 개선 및 온라인피해365센터 활성화

주관부처/부서	방송통신위원회 / 통신분쟁조정팀	협조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담당자	이종원사무관 / 백선흠 사무관	연락처	02-2110-1661/1666
소요예산	통신분쟁조정 ('22년) 731백만, ('23년) 681백만, ('24년) 781백만(추정)		
	온라인피해365센터 ('22년) 신규사업 ('23년) 1,390백만, ('24년) 1,825백만(추정)		

### □ 추진배경

- 다양한 유형의 통신·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피해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피해구제 제도 구축운영

### □ 현황 진단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운영) '22년도 조정위원회 전체회의(24회) 및 조정회의(133회)를 상시 개최하여 통신분쟁조정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처리
  - ※ 분쟁조정신청 : '19년 155건 → '20년 572건 → '21년 1,170건 → '22년 1,060건
  - ※ 분쟁 해결률 : '19.6.~'20.12. (53%) → '21.1.~12. (75.6%) → '22.1.~12. (82.9%)
- (온라인피해365센터 구축운영) 온라인 상 다양한 유형의 피해에 대해 일원화된 상담창구 역할을 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 구축운영('22.5월~)
  - ※ '22년 5.~12월말 640건, '23년 3.28일 현재 337건의 피해상담 접수(누적)

### □ 추진방향

- (통신분쟁조정제도 개선) 제도개선 및 분쟁해결률 제고로 국민불편해소 기여
- (온라인피해365센터 확대·강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연속적 운영을 위해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기관 MOU 확대를 이용자 피해지원 강화

###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통신분쟁 관련 개정법률 시행) 분쟁조정 신속성 제고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상임위원 신설 등 후속조치 적극추진
- (MOU 확대 및 법개정 등) 소관 불분명 피해사례 공동대응을 위해 온라인서비스피해지원협의회 MOU\* 확대 및 법개정 추진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사건지상거래센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이용요금, 속도품질 등 통신서비스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분쟁조정신청 폭증	○ 조정위원 증원 등 제도개선으로 신속한 이용자피해 구제 및 권익 강화에 기여
○ 온라인 상 경제활동 등이 일상화되면서 그 피해도 다양화되고 급속히 증가	○ 온라인 피해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및 피해구제 지원으로 전국민 권익증진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제도 특성상 일방이 조정안 불수락 시 분쟁조정 해결에 어려움 상존	○ 직권조정 도입 등으로 통신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국민불편 해소강화 기반 마련
○ 온라인 상 피해 관련 전문기관 간 연계처리로 국민피해 신속대응 필요	○ 온라인서비스피해지원협의회 MOU 확대로 피해지원 신속·공동대응 가능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통신분쟁조정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준비('23.6월)
- 온라인피해365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추진

**□ '23년 소요예산**

- 통신분쟁조정제도 : 681백만원, 온라인피해365센터 : 1,390백만원

**□ 추진체계**

- 사업시행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보조사업)

**□ 추진일정**

- 온라인피해365센터 법적 근거마련 (정보통신망법), 의원입법 추진 ('23.5월~)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공포·시행 ('23.7월)

**□ 홍보계획**

- 사업추진 일정별 보도자료 배포 및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등

**2-6-①****인사자율성 확대 등 인사운영 개선**

주관부처/부서	방송통신위원회 / 운영지원과, 의안·정책관리팀	협조기관	인사혁신처
담당자	김종우 서기관, 이명심 사무관	연락처	02-2110-1303, 1386
소요예산	-		

**□ 추진배경**

- 국정과제 실현과 효율적인 정부혁신 추진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사 자율성 제고, 인력충원 등 인사운영 제도 개선 추진

**□ 현황(문제점) 진단**

- 공무원 인사제도 및 성과평가의 경우, 임의적 인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이나 제도가 존재. 다만 엄격한 규정 등으로 인해 인사 자율성을 제약하는 경우도 발생
- 실무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 중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 지원 등을 위해서 결원 보충 필요

**□ 추진방향**

- 인사혁신처가 현재 개선 추진 중인 인사자율성 제고 관련 규정·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제도 및 규정 허용범위 내 방통위 차원의 자율성 제고 노력도 병행

**□ 세부 추진사항**

- (인사자율성 제고 제도 적극활용) 현재 인사혁신처가 추진 중인 인사 자율성 제도·규정 개선 사항을 적극활용하여 내부 인사 운영
  - 인사처 협의 등을 통해 인사특례 운영기관 지정 등을 연장하여 인사 자율성 제고 기반 마련

- (내부규정 개선사항 발굴) 방통위 내부 규정 중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개정하는 등 내부인사 운영 개선 추진
- (적극적인 인력충원) 행안부·인사처 협의 등을 통해 신규인력 채용·타부처 전입 등 다양한 충원경로를 통해 실무인력을 확충
- (성과평가 의견수렴) 성과평가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직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의견 수렴 실시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과제 실현·정부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사 자율성 제고 필요</li> <li>○ 성과평가 대상 직원의 평가 참여 한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자율성 제고 등을 통해, 국정과제 실현과 효율적인 정부혁신 추진 등을 뒷받침</li> <li>○ 성과평가계획 의견 수렴을 통해 참여 가능</li> </ul>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개정 검토(향후 인사혁신처 상위법령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개정 추진)

**□ 추진일정**

- '23년도 성과급 관련 의견수렴 및 지급계획 수립 : '23년~
- 인사운영 제도 활용 등 : '23년~
- 인사운영 특례기관 지정 연장 : '23.4분기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추진체계 / '23년 소요예산 등**

- 해당사항 없음

**3-7-①****재난방송 협력체계 강화**

주관부처/부서	방송통신위원회 / 재난방송관리팀	협조기관	기상청, 행안부, 산림청
담당자	류진원 사무관	연락처	02-2110-1408
소요예산	('22년) 800백만, ('23년) 400백만, ('24년) 600백만(예정)		

**□ 추진배경**

- 집중호우, 산불 등 국지화·대형화 되어가는 재난에 대비하여 국민에게 신속·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방송 주관방송사(KBS)·방송사 간 재난방송 협력체계 강화

**□ 현황(문제점) 진단**

- 기상이변 등으로 국지성 풍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재난관련 기관의 정보가 방송사에 신속히 공유되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데 한계

**□ 추진방향**

- 주요 재난발생시 재난 심층 정보, 국민행동요령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국민들이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송사·재난기관 간 재난정보 공유 및 전달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 추진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기상청·산림청 등 재난관리 주관기관·방통위·방송사와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재난정보 상호 공유 등 협력체계 강화
  - KBS 등 방송사업자와 재난관리주관기관과 재난현황, 대피방법·장소, 재난유형별 위험지역(산사태, 홍수침수) 등 정밀한 자료공유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 KBS·산림청, 산불·산사태 대응 재난방송을 위한 MOU 체결('22.12.6)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방송사·재난기관 간 제한적 정보공유	○ 산림청·기상청 등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방송사 간 재난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재난방송 주관방송사(KBS)에서 국민 행동요령을 제작하여 방송사에 공유	○ 국민행동요령 제작(KBS)시 지역방송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난별 지역특성을 반영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재난정보가 방송사에 신속하게 공유되지 않아 재난정보 제공에 한계	○ 재난관리 주관기관 보유 재난정보를 방송사에 공유하여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에 되는 재난정보 신속 제공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적극적인 재난정보 제공 필요

□ **'23년 소요예산**

- KBS 재난방송 운영지원(21억, 방발기금) 중 재난콘텐츠 제작지원(4억)

□ **추진체계**

- (방통위) 방송사 의견청취 및 재난관리 주관기관과 회의 개최
- (재난관리 주관기관) 산림청, 기상청 등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정보를 방송사에 제공
-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지역방송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국민행동요령 제작

□ **추진일정**

- KBS·방송사업자·산림청·기상청 등 재난관리 주관기관 간 협력체계 추진(연중)
- KBS를 통해 지역방송사에 필요한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제작·공유(연중)

□ **홍보계획**

- 국민행동요령 등 재난 콘텐츠를 제작(KBS, 37편 예정)하여 타방송사 공유

주관부처/부서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협조기관	과기부
담당자	전혜정 사무관	연락처	02-2110-1522

### □ 추진배경

- 불법스팸의 주요 발송 수단이 되고 있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불법스팸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추진

### □ 현황(문제점) 진단

- 대량문자발송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는 등록하려는 발신번호의 본인명의 여부 증명을 위해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을 제출하나, 불법스팸을 발송하려는 자가 이를 위조하여 허위 발신번호로 불법스팸 문자를 발송하는 사례 발생
  - \*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 통신사가 이용자의 자사 서비스 이용사실을 확인해주기 위해 이용자에 발급해주는 문서, 대량문자발송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가 대량문자발송사에 제출

### □ 추진방향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발신번호 유효성 검증절차 개선) 발신번호 유효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 이용자가 대량문자발송서비스 가입 시 등록하는 발신번호를 문자발송사가 통신사에 확인(명의도용 여부 등)하는 '유효성 검증절차' 도입
- (등록기준 강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량문자발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기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영세 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추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진입규제 외 대량문자발송사에 대한 규제체계 없음	○ 대량문자발송사에 대한 진입 및 사후 규제 강화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대량문자발송서비스 가입 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위·변조 등을 통해 발신번호가 위조된 스팸 다량 발송 위험	○ 발신번호 유효성 검증절차 도입으로 발신번호 위조 스팸 발송 건이 크게 감소
○ 불법스팸 발송을 위해 소규모 대량 문자발송사 설립 가능	○ 대량문자발송사 등록요건이 강화되어 소규모 발송사에 대한 검증체계 마련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규제가 강화되는 대량문자발송사들의 반발 예상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관련 과기부 협의 필요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 **'23년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 **추진일정**

- 연구반을 구성·운영 : '23.6월~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 '23년 중

□ **홍보계획**

- 방통위 홈페이지, 방통위 페이스북 등 제도개선 홍보

### 3-9-①

##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주관부처/부서	방송통신위원회 / 지역미디어정책과	협조기관	-
담당자	윤영란 사무관, 오형권 사무관	연락처	02-2110-1451, 1294
소요예산	('22년) 440백만, ('23년) 450백만, ('24년) 470백만(추정)		

### □ 추진배경

- 전국 10개 시청자미디어센터는 각 지역의 미디어 광역 거점시설로, 미디어교육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소통의 구심점 역할 수행 필요

### □ 추진방향

-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10개)와 지자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의 미디어교육 관련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미디어 소통 활성화

### □ 세부 추진사항

- **(지역전문가 상시협의체 구성)**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정기적 자문 협의체 개최
  - 지자체, 지역 학계, 방송사, 유관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미디어교육 관련 자문 및 협력사항 발굴 추진
- **(지역사회 방송설비 지원)** 권역 내 원거리 지역민이 차별없이 시청자미디어센터 방송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거리 지역 유관기관에 방송장비 지원
  - 카메라, 삼각대 등 방송 장비를 권역 내 교육이 필요한 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위탁 운영하여 지역사회 장비이용 활성화에 기여
-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 지원)** 지역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미디어를 통해 소통·논의할 수 있도록 미디어 활동 지원
  -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여 미디어를 매개로 한 지역 내 소통 활성화에 기여
  - ※ 마을 소개영상 만들기, 우리 마을 탄소제로 실천법 등 교육·콘텐츠 제작지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시청자미디어센터 자문협의체 운영(40회)	○ 시청자미디어센터 자문협의체 운영(44회)
○ 지역사회 방송설비 지원(20개 기관)	○ 지역사회 방송설비 지원(20개 기관)
○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지원(200개)	○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지원(203개)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이전에는 유관기관, 지자체 등이 미디어교육 관련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여 협력체계 미흡	○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이후, 센터를 중심으로 미디어교육 관련 지역사회,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소통의 구심점 역할 수행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미디어교육에 대한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추진의지 필요

**□ '23년 소요예산**

- 총 450백만원

**□ 추진체계**

-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교육 정책 수립·시행, 예산 확보 및 사업 관리
-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사업 운영 및 지자체·지역사회 협력
- (지자체·지역사회) 미디어교육 사업 협력 및 홍보, 주민 참여 독려

**□ 추진일정**

- 시청자미디어센터 자문협의체 운영 : '23. 2 ~ 12월
- 지역사회 방송설비 지원 : '23. 2 ~ 12월
-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 지원 : '23. 4 ~ 12월

**□ 홍보계획**

- 지자체 협조를 통한 지역 유관기관, 지역민 대상 교육 참여 독려 및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사업 홍보(연중)

## IV. 정부혁신 확산 방안

### □ 정부혁신 활성화 방안

#### ○ (정부혁신 교육)

- 정부혁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 진행 추진
- 직원역량강화를 위하여 업무 전반의 다양한 교육 실시

#### ○ (정부혁신 학습활동)

- 정부혁신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타 기관 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실시
- 정부혁신 아이디어 수렴 및 혁신활동 피드백을 위한 실무직원 참여 회의 개최

### □ 성과 홍보 방안

#### ○ (홍보계획 수립 및 관리)

- 정부혁신 실행계획 주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홍보계획 수립·관리 및 정책홍보 추진

#### ○ (온·오프라인 홍보)

- 정부혁신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 활성화 추진
- 보도자료 등 언론홍보와 함께 방통위 SNS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정책홍보 실시

2023년 정부혁신 추진과제 연간 홍보 일정

추진 과제	일정										주 관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 개선					·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 개선 · 제도개선사항 카드뉴스 등 온라인 홍보							방통위
AM라디오 - 표준FM 라디오 기능조정											- AM라디오 송출중단 · AM 라디오 송출 중단 시 사업자별 청취자 고지 실시	방통위 및 각 사업자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방통위
	· 방송광고 지원사업 1차 선정결과 보도자료			· 방송광고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안내 보도자료	· 방송광고 지원사업 2차 선정결과 보도자료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 위치정보법 전부개정	- 위치정보법 전부개정	- 위치정보법 전부개정	- 위치정보법 전부개정	- 위치정보법 전부개정	- 위치정보법 전부개정	- 위치정보법 전부개정	- 위치정보법 전부개정	- 위치정보법 전부개정	- 위치정보법 전부개정		방통위
											· 법개정사항 등 개선사항 방통위 홈페이지, 페이스 북 등 온라인 홍보	
방송재난 관리 강화		-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하절기)	-	-	-	-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동절기)				방통위
		-	특별점검 지역방송사 대상 주요 내용 안내	-	-	-	-	특별점검 지역방송사 대상 주요 내용 안내				

추진 과제	일정										주 관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통신분쟁 조정제도 및 온라인피해 365센터 활성화			온라인피해365 센터개소 1주년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및 제2기 조정위원 임기만료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및 제2기 조정위원 임기만료						방통위	
			-온라인피해365 센터 개소 1주년 기념 기관장 기고문  · 온라인피해365 센터 1주년 기념 피해상담 실적 분석 보도자료  -온라인피해365 센터 1주년 기념 대국민 슬로건 공모전 추진  -온라인피해365 센터 관련 대국민 참여형 이벤트 운영	-제3기 통신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위원 위촉 보도 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완료 및 시행(7.4) 보도 자료							
재난방송 협력체계 강화		· 재난방송 주관방송사(KBS) 재난 콘텐츠 제작·지원시 지역방송사 의견 수렴									방통위	
		· 국민행동요령 등 재난콘텐츠 제작시 타방송사 공유(연중)										
불법스팸 대응											-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방통위
											· 법개정사항 등 개선사항 방통위 홈페이지,페이스 북 등 온라인 홍보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 미디어교육 관련 지역사회 협력 강화		· 미디어교육 관련 지역사회 협력 강화			· 미디어교육 관련 지역사회 협력 강화	방통위
						· 대전시 협력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 개최 홍보  · 부산시 협력 장애인 미디어 축제 개최 홍보		· 지역공동체 미디어 활동 우수사례 공모 (행안부 공동)		· 지역공동체 미디어 활동 우수사례 시상 (행안부 공동)		